

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서

인증번호	제 호		
프로그램명			
성명		법인·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	
생년월일	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주소 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		
유효기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	

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

직인

유의사항
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-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 - 나.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
 - 다.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
 - 라.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인증변경 신청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교육 인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
 - 나. 단순한 착오, 오기,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
-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2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- 인증을 받지 않은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2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